

● 제28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3.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경선 의원 발의]**

의안번호 339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이경선 의원 발의(찬성 10명)

나. 제출일자 : 2019년 1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 **2. 제안이유**

가.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에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임. 이에 시립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나.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5조의2제2항~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없음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인 바, 시립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 개정안은 강북삼성병원 고(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은평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상해 사건 등 의료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안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응급실 주취자 난동이나 간호사 등에 대한 성희롱,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병원내 진료방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왔음.

※ 아래의 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사례임

사건내용	선고내용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벌금 300만원
간호사에 대한 욕설, 폭행	벌금 200만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벌금 100만원
의사 흉기위협 및 폭행(전치 4주)	징역 8개월
응급실 간호사 협박으로 징역8월 선고 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위협 및 협박	징역 2년6개월, 벌금 50만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니가 의사냐”, “경찰 불러라”등으로 위협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 및 폭행	징역 4개월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벌금 300만원

출처 : “경찰이 와도 의사에 폭언·발길질” 응급실 폭행 공포 중앙일보 2018년 7월10일

##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제5조의2(아래 표 참조)를 신설하는 안으로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진료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시장에 대해 책무로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명시된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중 1개 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안임.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li> <li>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li> <li>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li> </ol>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 다. 세부사항 검토

- 시민건강국은 총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 중에 있음. 각 병원은 병원별 특성에 맞추어 보안요원 등은 운영중에 있음. 대부분의 병원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리적인 요건은 기존에 갖추고 있거나 갖추어 예정이라고 함.

## 【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인 보호 관련 안전조치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병원명	위 치	비상연락시설 <sup>1)</sup>		비상대피시설 <sup>2)</sup>		보안인력 배치 <sup>3)</sup>		기타 <sup>4)</sup>		비 고 (설치장소)
			설치수	비용	설치수	비용	인원	비용	설치수	비용	
기존 설치	어린이	서초구	-	-	-	-	4	185,700	-	-	- 청경 4
	서 북	은평구	-	-	7	7,000	12	410,000	-	-	- 진료실 - 청경 4, 공무직 경비 9
	은 평	은평구	-	-	2	580	3	207,000	1식	8,485	- 진료실 / 청경 3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 송수신기 82개
	서울의료원 (분원포함)	중랑구	2	616	-	-	18	954,000	-	-	- 응급실
	보라매	동작구	-	-	54	개설 시 설치	25	1,221,419	9	11,700	- 진료실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경광등 포함) * 응급실 내 경찰관 1명 상주 <sup>1)</sup>
	동 부	동대문구	-	-	1	2,200	7	326,882	1	120	- 진료실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 * 응급실 내 경찰관 1명 상주 <sup>1)</sup>
	북 부	중랑구	-	-	-	-	4	156,278	-	-	
	서남병원	양천구	-	-	-	-	13	574,934	-	-	
	장애인치과	성동구	-	-	-	-	-	-	-	-	
	축령정신	남양주시	-	-	1	개설 시 설치	-	-	2	290	- 진료실 - 기타설치 : 외래진료실 가스총 비치
고양정신	고양시	-	-	4	개설 시 설치	2	45,000	-	-		
신규 설치 예정	동 부	동대문구	-	-	-	-	-	-	2	600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백암정신	용인시	7	500	6	12,000	-	-	-	-	- 비상연락시설 : 진료실(편의점 방법용 비상벨 형태로 설치(단말기 설치, 한국통신 서비스) - 비상대피시설 : 벽돌시공 벽면에 비상문 설치 (진료실4/방사선실1/임상병리실1)

- 주 : 1)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 비상연락시설 설치 병원은 설치당시 설치비용 기재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 비상대피시설 설치 병원은 설치당시 설치비용 기재  
 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 연간 소요 비용(19년 예산액)  
 4) 기타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 구체적인 시설내용과 설치당시 비용

1) 서울지방경찰청의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병원 업무 협력으로 경찰관 배치

-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로의 직접연결은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만이 갖추고 있는 상황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점(서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인 은평병원 등 각 병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직영병원인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을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 진료가 주된 은평병원 보다 서북병원에 더 많은 안전관련 인원이 배치되는 점 등은 집행부가 자원배분에 있어 물리적인 크기만을 고려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음.
- 백암정신병원의 경우 외래환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특성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남.
- 시립병원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과 비일관성, 자원(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진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3 종합의견

- 최근 의료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발의된 본 개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국회에도 유사한 입법이 있고<sup>2)</sup> 조례로 이를 규정하지 않

2) 김승희 의원(의안번호 18116)과 같은 경우 의료안전기금의 설치와 이를 통한 안전시설의 설치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라도 안전조치는 적절하게 가능한 점, 국회에서 법률이 제개정 되는 경우 조례의 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를 동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